



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방안 개요

양승현 연구위원

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는 최근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적 책임이 금융기관 이사회 및 대표이사에게 있음을 법률에 명문화하고, 준법감시인 위상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을 실질적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며, 임직원의 1% 이상의 준법지원인력을 확보하게 하는 등 지원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'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방안'을 발표함. 혁신 방안은 반복되는 금융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자기책임에 근간을 둔 실질적이고 유효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, 내부통제 조직 및 체제의 강화 및 내부통제 체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. 위 방안의 실행을 위해서는 법규 개정이 필요하며, 향후 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쟁점 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임

■ 지난 10월 17일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(이하 '혁신 TF'이라 함)는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·경영진 등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화하고 준법감시인의 위상 및 준법지원 조직의 역량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'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방안'(이하 '혁신 방안'이라 함)을 발표함

- 내부통제는 회사의 이사회 및 전 임직원에 적용되는 기준으로써 회사의 업무 효율성, 재무보고의 신뢰성, 법령 등의 준수라는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절차적 보장¹⁾을 말함
- 복잡다기해지는 금융환경 및 금융시장 부실의 실물경제 전이위험을 고려할 때,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사전적 예방은 금융기관의 건전 경영 및 금융시장 질서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로 평가됨
 -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서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이 이루어져왔으나²⁾, 실질적이고 유효한 내부통제 체제 구축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
-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증권 우리사주조합 주식 배당 사고와 NH농협 뉴욕지점에 대한 미국 감독당국의 제재금부과 사례 등을 계기로 금융기관 내부 통제의 현황을 파악해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6월 20일 학계 등 6인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 TF를 발족함

1) 박재영(2014), 『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 연구』, p. 7 참조함

2) 기존에는 보험업법 등 금융 관련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내부통제에 관해 규율하고 있었으나, 2016년 이래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및 준법감시인의 선임 등 금융기관 내부통제의 기본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(이하 '지배구조법'이라 함)이 시행되고 있음

- 혁신 TF는 약 4개월의 활동을 마치고 (i) 금융기관 내부통제 ‘조직 및 체제’의 강화, (ii) 내부통제 체제 ‘운영의 실효성’ 제고, (iii) 각 ‘금융권역별’ 내부통제 제도 혁신으로 구성된 혁신 방안을 마련함
- 본고는 전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(i) 및 (ii) 부분 혁신방안 및 (iii) 부분 중 보험약관 검토 의무화, 보험금 지급절차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 보험권역 내부통제 혁신방안에 한하여 검토함

■ 첫째,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·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, 준법감시인의 위상 및 지원조직의 역량을 제고하는 등 금융기관 내부통제 조직 및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함

구분	세부내용
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역할 및 책임명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이사회·대표 이사의 최종적 책임 명문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내부통제의 최종적 책임자는 이사회 및 대표이사임을 법에 규정 · 이사회가 내부통제 체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본방침과 정책을 결정 ·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결정한 기본정책을 집행할 책임 부담 ② 일반 임원의 관리·감독 책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소관 업무 관련 임직원의 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사고 예방대책, 사고 시 조치방안·기준 마련 등 관리감독 책임을 수행하도록 법에 규정 ③ 중요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중요사항(금융사고의 예방, 불공정 행위 방지, 이해상충의 방지 등)의 준수 의무를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한 결과 초래 시 제재 ④ 영업점 내부 통제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영업점 내부통제 담당자는 주요 사항을 준법감시인에게 직접 보고 인사 평가 시 준법감시인 의견을 반영토록 유도
준법감시인 위상 및 준법감시조직 역량 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준법감시인 지위·전문성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 범위 확대 · 내부 직제상 실질적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유도 · 자격요건으로 내부통제 업무 경력(예: 2년) 추가 ② 위법업무 정지 요구 의무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준법감시인의 위법업무 정지요구권 법규화 및 중대한 위법사항의 경우 정지 요구 의무화 ③ 지원조직 적정 인력 및 전문가 확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총 임직원 수의 1% 이상 지원인력 확보 · 내부통제 전문인력의 순환근무 예외 인정 및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(IT, 파생거래 등) 인력배치 등 지원인력 전문성 제고
건전한 지배구조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원칙적으로 모든 임원에 대하여 전문성(금융에 대한 지식과 업무경험), 도덕성, 공정성 및 직무전념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 도입 ② 사후보고제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적격 판단 근거 제출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성실한 자체적 자격 심사 유도³⁾ ③ 지배구조 내부규범 충실성 의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충실하게 마련할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, 위반 시 과태료 부과
취약부문 내부통제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대주주 계열회사 거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내부고발자 보호 방법 및 절차를 내부통제기준에 구체적으로 마련·운영 · 내부통제위원회는 해당 거래 시 법령·내규 위반 소지를 파악해 이사회 보고 ② IT 업무영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산 체계를 통해 수행되는 업무 중 “중요 업무”에 대한 통제방안을 업무규정에 반영·전산 체계에 충실히 구현⁴⁾ · 필요 시 외부 기관의 점검을 받도록 함 ③ 국외 영업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해외 진출 시 준법감시 인력, 보고 체계 등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

- 둘째,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내부통제 운영현황을 공시하고, 단기성과보다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성과평가지표를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 체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

구분		세부내용
내부통제 운영현황 공시 및 자체점검 강화	① 내부통제 체제 운영 현황 공시	· 내부통제 체제 및 운영 현황을 공시(영업 비밀 등 제외) · 아울러 내부통제기준 준수 목록에 대한 확인 점검 제도 도입을 권장
	② 성과평가 운영 원칙 규정	· 단기성과보다 건전경영을 위한 내부통제를 중시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성과평가지표(KPI) 운영 원칙을 법률에 선언적으로 규정
	③ 임직원 채무현황 파악제도 도입	· 금융사고 가능성이 있는 직무 담당 직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채무 상태를 소속 금융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제도를 금융기관 자율로 시행하게 함
교육·연수 강화	① 임직원 교육 의무화	· 전체 임직원의 내부통제 및 윤리교육 의무화·교육 이수율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독려 방안 고려
	② 준법감시인력 교육 강화	· 금융감독원과 전문연수기관 ⁵⁾ 이 협력하여 금융기관 경영진 및 내부통제 담당자 대상의 연수 교육 과정을 도입하고, 일정 시간 이상의 연수 의무화
	③ 자격증 도입	· 내부통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증 제도 도입 검토 필요
감독당국의 지원강화	① 우수 금융기관 인센티브 등	· 제재 양정 시 감경 규정 적극 적용 및 감경 대상 확대(감독자 및 준법감시인) · 감독당국은 포상 등 추가적 유인책 마련
	② 내부통제 경영 실태평가 강화	· 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 중 내부통제 평가비중 상향 조정 · 내부통제 부문 평가등급이 일정 이하일 경우 종합등급의 상위등급 부여 제한
	③ 내부통제사고 정보공유 강화	· 감독당국이 금융사고 유형과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 등을 주기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에 제공

3) 혁신 방안에서는 감독기관에 의한 임원 적격성 심사 제도에 관해서는 감독기관의 신뢰성 확보 및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향후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음
 4) 혁신 방안은 그 예로서 다중 결재 등 전결권자 확인 절차, 경고 문구 확인, 관련 부서 통지 등의 통제방안을 들고 있음
 5) 한국금융연수원, 보험연수원, 금융투자교육원 등

- 셋째, 보험권역에서는 불안전판매 및 보험금미지급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 개발 시 반드시 법률전문가가 약관을 검토하도록 하고, 보험금 지급 관련 판례 및 분쟁사례를 참고하며, 원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금 지급 관련 판례를 내규에 적시 반영하는 등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제시함

구분	세부내용
보험금 지급 관련 내부통제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보험약관 검토 의무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상품 개발 시 법률전문가의 약관 검토 의무화 · 상품개발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② 보험금지급절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보험금 지급 관련 판례의 내규 적시 반영 및 이를 위한 준법감시 부서 역할 제고
신용공여 관리절차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신용평가 및 위험 관리체계 확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새로운 형태의 신용공여 취급 시 시장 전망, 업계 동향 및 차입자의 경쟁력 등을 감안토록 함 ② 종합적·체계적 담보관리방안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담보대출 관련 담보의 성격, 담보물 정기적 확인, 현장 실사 확대 등 담보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함
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상품개발 관련 내부통제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보험상품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상품개발 관련 내부통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협회의 표준내부통제기준(보험상품 관련 내부통제의 담당자·책임자, 점검 방법, 교육·점검 주기 등) 마련 필요 ② 판례·분쟁사례 공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상품 개발 시 보험금 지급 관련 판례 및 분쟁 조정 사례 확인

- 금융감독원은 혁신 방안 발표에 따른 향후 계획으로 법규개정 없이 가능한 사항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,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라 밝힘

- 혁신 방안 중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경영실태평가에서의 내부통제 부문 비중 상향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올해 내 이행계획을 밝히고 시행세칙 개정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는 보도⁶⁾가 있었음
 - 그러나 이사회 및 대표이사 책임 명확화 및 준법감시인 지위 강화 등 대부분 혁신 방안은 금융위원회 소관인 지배구조법령 또는 권역별 개별 법령 내지 감독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실제 법규 반영 여부 내지 방향은 현 시점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움

-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, 내부통제는 금융기관의 자율규제적 사항으로서 법규로 강제하는 데 있어서는 구체적 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

- 혁신 방안은 내부통제 관련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쟁점을 제기하고 있는 바, 향후 법령 내지 감독규정 개정 추진 시 학계, 법조계 등 전문가는 물론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**ki21**

6) 더벨(2018. 10. 23), “금감원, 내년부터 내부통제 평가비중 확대한다” 기사 참조, http://www.thebell.co.kr/free/content/ArticleView.asp?key=201810220100031260001900&svccode=00&page=1&sort=thebell_check_time